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91
----------	-------

제출년월일 : 2021. 0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기준, 협약 체결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 삭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7. 15. ~ 8. 4.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2021.08.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2조제1항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u> ----- ----- ----- <u>산하기관 등</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관한 업무와 영 제105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그늘막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
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한다.

②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
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
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구
모공사 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
도록 한다.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위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
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
동 해산한다.

②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 제>

<삭 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계획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모든 사무와 회의록의 작성 및 정리·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삭 제>

제9조(협약체결 등) ①구청장은

<삭 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
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
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
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

<삭 제>

기관이 구 예산사업의 소규모공
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
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징수 등) 구청장은

<삭 제>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
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감독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
게 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
금 시공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

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
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
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
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
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
설 등을 조사 및 검사 할 수 있
다.

<삭 제>

<삭 제>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삭 제>

<삭 제>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보칙)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내 중복내용 삭제 등 정비하는 것으로,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도로과 김대욱 (☎ 3153-9752)